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4889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488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나20519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17가단170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조합

판결선고 2022. 12. 29.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나205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납입한 연체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256조, 제257조, 소송대리권의 흠결,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 제3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